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제2018 - 71 - 585호

안 건 명 의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12. 19.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나 다음과 같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62,000,000원

나. 과 태 료 : 5,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IT시스템운영 및 통신과금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24조, 제30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17년말 기준)

사업자명	대표자	업종	종업원 수	매출액 (단위:백만원)
			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관련없는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 매출은 매출임

피심인은 부터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로 이동전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 ’, 서비스를 부터 제공하고 있다.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라 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2017.12.8.)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8.1.29.~2018.11.9.)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별정통신사업자 와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별정통신 서비스(일명 '알뜰폰')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①고객관리시스템 운영, ②고객 과금·수납 관련 업무, ③서비스 품질 개선, ④본인확인(본인인증)서비스 업무 대행, ⑤통신과금서비스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고 있다.

* 피심인은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명('18. 9월 기준)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

가.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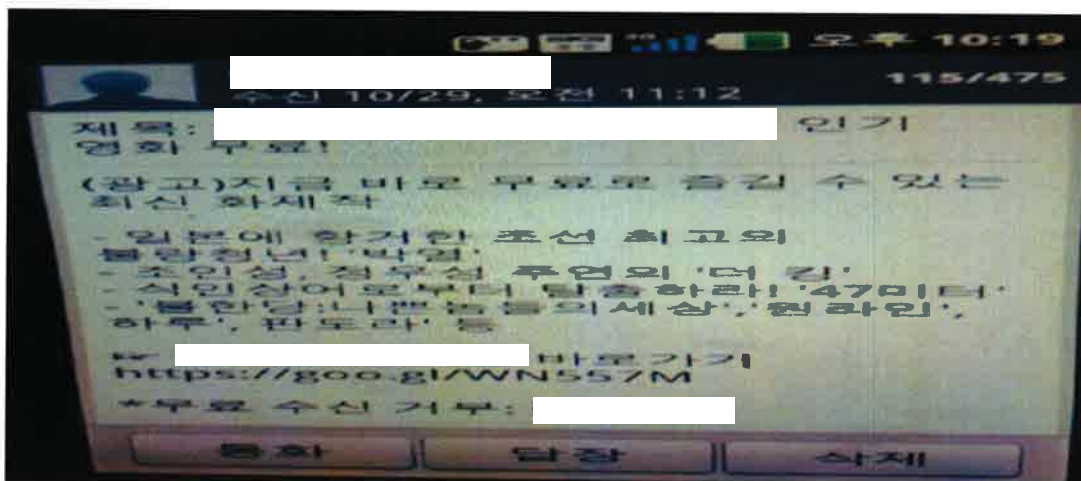
피심인은 2017. 10. 29.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광고 문자를 피심인의 고객센터 발신번호()를 통해 총 431,660명에게 발송하면서 피심인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그림 1]과 같이 발송한 사실이 있다.

[표 1] 서비스 광고 문자 발송 건수

구 분	전체 문자 발송 가입자 수	피심인 자사의 마케팅 활용 미동의자 수(B)	별정통신 가입자 수(A)	계 (A+B)
저가요금 가입자 수	431,660명	1,945명	6,910명	8,855명

[그림1] 별정통신가입자에게 발송된 피심인의 광고 문자 메시지



나. 수탁자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피심인은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2017. 10. 29.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광고 문자를 피심인의 고객센터 발신번호()를 통해 총 431,660명에게 발송하면서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에게 [그림 1]과 같이 발송한 사실이 있다.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 미조치

민원신고인은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로서 통화 및 문자 송·수신 기능 외에 피심인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마케팅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광고 문자를 수신한 바, 피심인이 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낸 경위를 2017. 11. 2. 최초로 피심인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하였으나 피심인은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후, 민원신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2017. 11. 23. 피심인에게 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그림 2]와 같이 메일로 보냈으나 피심인은 이후 아무런 대응도 없이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림 2] 민원신고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V]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2017년 11월 23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명	박**	전화번호	010-****-****
	생년월일	19**년**월**일		
	주소	**도 ***시 *****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내용	[V]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V] 처리정지	※ 개인정보침해 사고처리 지침요청을 기관에 해야함으로, 기관들의 처리 결과를 본후 귀중후의 처리정지상태를 해결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요구인

박**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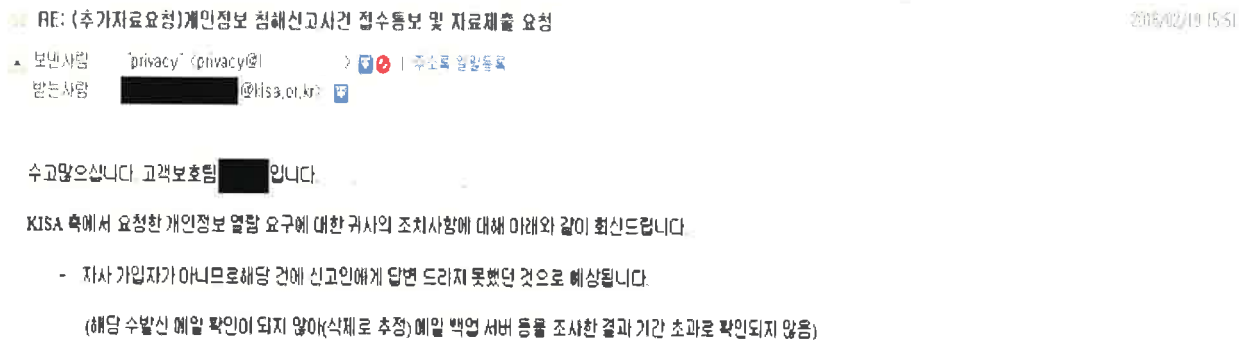
귀하

0000

이에 따라 민원신고인은 피심인의 개인정보 열람요청 무대응에 대해 2017. 12. 8.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피심인은 위 민원신고건에 대한 KISA의 자료요구에 대해 2018. 2. 19. [그림 3] 과 같이 자사의 가입자가 아니므로 답변을 못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였다.

[그림 3]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관련 질의에 대한 피심인의 답변서



아울러, 피심인은 위 민원신고건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실수로 광고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문자발송시스템 변경을 완료한 상태라고 2018. 2. 12. [그림 4] 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림 4] 민원신고건 관련 피심인 제출문서(내용발췌)

- 3) 본 사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
> 해당 사건 개요 및 당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년 10월 29일 당사 서비스인 (=) 광고 전송 메시지가 발송함 (문자 수신 대상 : 당사 미사용자)
 2. MVNO 가입자 및 마케팅 활용 미동의 모바일 가입자 등은 수신대상에서 제외 처리했어야 하나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해당 MVNO 가입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3. 당사는 17년 하반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 문자 발신 시스템 변경을 완료해놓은 상태이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 이상-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7. 17. 및 8. 2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 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7. 30. 및 8. 30.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심인은 위원회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겸허히 수용하고 문자 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 점검 후 개선을 완료하였음
- 본 사고의 동기 및 목적에 있어 고의나 악의적인 부분이 없는 단순 실수였으며, 본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직접당사자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해 등 추가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음
- 또한, 본 위반행위로 이미 서울전파관리소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으로 2018. 5.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심인은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PIMS() 및 ISMS() 인증을 획득, 유지 하는 등 평소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바람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거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없는 한 곧바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사항

가.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한 행위

피심인이 2017. 10. 29. 자사의 서비스 광고 문자를 총 431,660명에게 발송하면서 피심인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 이용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나. 수탁자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개인정보의 처리위탁)}한 행위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인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에게 자사의 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위반한 것이다.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4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18. 9월 기준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 736,893명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받은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피심인이 별정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이용자의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목적외 이용	§24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수탁 목적외 처리	§25③		수탁자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
	이용자 권리	§30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나 다음과 같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중과실 여부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단순 과실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중대성의 판단

‘부과기준’ 제5조제2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므로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로 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을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u>보통 위반행위</u>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2.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부과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이나,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을 절사한 62,000,000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천원	기준금액의 50% 감경 (천원)	천원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감경 (천원)	62,000천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VI.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제4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러.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5호	1,000	2,000	3,000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4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와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유지하는 등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사업자명	과태료 금액				근거법령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위반내용	처분근거
	1,000	-	500	500	\$30④	\$76①5호

3. 최종 과태료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3호(과징금), 제76조제1항제5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9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